

전과에 관한 규정

제 정 2009. 3.
 개 정 2010. 6.
 개 정 2012. 7.
 개 정 2014. 5.
 개 정 2016. 2.
 개 정 2017. 2.
 개 정 2017. 8.
 개 정 2019. 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0조에 의거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6.02.01.)

제2조(자격) ①전과 신청의 자격은 신청일 기준 2학년 진급 예정자 또는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로서 소속 학부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.(개정2016.02.01.)(2017.08.28.)
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과된 학부(과)의 소속 학생은 수강학점 및 학년에 제한 없이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.(개정 2014. 05. 13)(개정2016.02.01.)

③(삭제2016.02.01.)

④(삭제 2017.08.28.)

제3조(시기 및 범위) ①전과의 신청 및 허가 시기는 매 1학기 및 2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으로 한다.(개정2016.02.01., 2017.08.28.)

② 전과는 재학 중 1회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과의 요청을 받아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 2회까지 전과할 수 있다.(개정2016.02.01.)(개정 2019.8.22.)

③학부(과)의 수용능력 및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학부(과)로의 전과를 제한할 수 있다.(개정 2016.02.01.)

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신청기간 이후에 복학한 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개강 후 4주까지 신청할 수 있다.(신설2016.02.01.)

⑤전과로 인한 학년 및 학기의 이동은 신청시점과 동일한 학년 및 학기로 한다.(신설2016.02.01.)

제3조의2(전과인원의 제한)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부 학과의 전과 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제한 학과 및 전과가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(개정 2019.8.22.)

1. 유아교육과는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.
2. 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, 작업치료학과는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4조(신청) 전과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및 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기한 내에 전입하고자 하는 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2016.02.01.)

1. 전과허가원 및 사유서
2. 전입학생 학점인정표
3. 성적증명서
4. 기타 관련서류

제5조(허가) ①전과는 전출 및 전입학과의 검토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.(개정2016.02.01.)

②전과 신청자수가 수용능력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적성여부 및 사유 등을 고려한 전출학부의 의견과 교양필수성적 및 기초평가 등을 고려한 전입학부의 검토에 따라 그 순위를 정한다.

제6조(교과이수) ①전과한 자는 전입학부의 교육과정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, 이수학점에는 전출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. (개정2016.02.01.)

②전과한 자는 전입당시 해당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.

③기 취득한 학점은 해당 학과(전공)단위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한다.

④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이수 교과목을 지정받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7조(학적 관리) 전과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당시 부여받았던 학번을 그대로 적용하여 학적을 관리한다.

제8조(재학연한) 전과한 자의 재학 연한은 종전에 재학한 연한을 통산한다.

제9조(부전공 등의 제한) 전과한 자는 전출한 학부를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.

제10조(기타) 전과에 관하여 학칙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2학기 전과 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대상) 이 규정은 2019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생부터 적용한다.